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<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>과 <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> 폐지와**  **관련한 결정**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9호  《<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>과 <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> 폐지와 관련한 결정》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 국장 장마우  2015년 11월 10일 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 개혁에 부응하고 신규 개정한 <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>을 관철하기 위해 <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>(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3호)와 <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>(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4호)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.  이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|  | **关于废止《流通环节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》 和《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》的决定**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 第79号  　　现公布《关于废止〈流通环节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〉和〈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〉的决定》，自公布之日起生效。  　　 局长 张茅  　　 2015年 11月 10日  　　为贯彻实施新修改的《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》，适应食品安全监管体制改革，现决定废止《流通环节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》（2009年7月30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43号）和《食品流通许可证管理办法》（2009年7月30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44号）。  　　本决定自公布之日起生效。 |